

공직자 청문회제도의 도입

朴 東 緒*

.....<목 차>.....	
I. 서 언	III. 비교 고찰
II. 청문회 도입의 배경	IV. 도입상의 고려점

〈요 약〉

우리는 憲法上 權力分立體制를 갖추고 있지만 權力이 行政組織의 각 계층의 기능에 따라 배분되지 못하고 상충부에 集中되어 있어 이런 권력을 누가 정약하고 있고 어떻게 행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important한 職位에의 임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現政府의 출범초高位職任用上の問題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시정책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런 취지에 따라 우리를 포함하여 몇 나라의 任用方法을 비교검토한 후 인사청문회를 소개설명하고 우리의 경우 이의 도입 필요여부와 도입상의 고려점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I. 서 언

우리는 헌법상 권리분립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실체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며 따라서 3권중 행정권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를 가리켜 행정국가라고 호칭하고 이러한 현상은 선진민주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입법국가시대를 겪어 보지 못해 이러한 역사적 단계를 거쳐서 행정국가화하고 있는 국가와 다른 점이 질적으로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권은 더욱 막강하며 남용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여구나 이러한 막강한 권력이 행정조직의 각계층의 기능에 따라 배분되어 있지 못하고 상충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그런데 유감인 것은 그간 이와 같이 중요한 직위에의 임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여러가지 점에서 있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현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욕에 비추어 출범 초의 고위직 임용상의 몇 가지 문제가 탄생하자 이에 대한 시정책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 인준(인사) 청문회 제도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몇 나라의 임용방법을 비교 검토한 후 인준 청문회(Confirmation Hearing)를 소개 설명하고 우리의 경우 이의 도입 필요여부와 도입하는 경우에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주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이 되며 특히 우·준청문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되겠으며 그들이 우·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 사법부, 외교관 및 군인들의 고위직과 이들의 임명을 위한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지위 즉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원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직이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이용한 방법은 주로 기존문헌과 관계인의 면접이었으나 국내에 서는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대단히 어려웠으며 따라서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미국에서 간행된 고급공무원 인사에 관한 간행물들이라고 하겠다.

II. 청문회 도입 논의의 배경

동·고금을 막론하고 정부의 각 고위직에 적격자를 임용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의 지질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신의의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개인이나 소수인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성이 많으므로 가급적 여러과정이나 사람의 견증을 거치로서 실수할 가능성을 자율 또는 타율적으로 감소하려는 노력을 많은 나라들- 해 왔다고 하겠다.

이 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도 그간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집권자에 따라 방안의 변화가 있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임명권자가 일단 여러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았거나 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의 명보를 작성한 후 이들 중 특정적 임명코자 하는 경우 관련사정기관을 통하여 여러가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케 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세평을 알아 보기 위하여 언론 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적격자라고 하는 결심이 서면 인준을 요하는 소수 특기직의 경우는 이를 거치게 되며 그러할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는 곧 바로 「명절차를 밟아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이용되었어도 그간의 평가를 보면 이념이나 도덕 신념에서, 능력, 경력, 성격면에서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일차집단기준에 치우치는 인위적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장관직이나 비서진 임명이 발표되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김대통령도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재임명결차를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실수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로서 미국의 청문회제도의 도입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 김 대통령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 그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¹⁾

첫째로 김 대통령의 경우 야당원으로 장기간 있었으므로 현정부가 필요로 하는 유자격자를 직접 알고 있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는 것.

둘째 기존의 제행정기관의 간부 및 사정기관을 상대적으로 믿기 어려워 이들의 추천이나 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것,

셋째로 정당인의 인선과 행정인의 인선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행정인의 경우 공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극으로 재산공개가 지니는 바람직한 기능에 비하여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과언화한데 있었다고 하겠다.

○ 상과 같은 원인을 정리 요약한다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명단에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평가나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나 기관의 수가 적었다고 하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하자 앞으로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보다 바람직한 인물을 임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제의가 있었으나 그중의 하

1) 박동서, 「인사청문회제도」, 『자유공론』, 1993. 4월, pp. 24-26.

나가 인준 청문회라고 하겠다.

III. 비교 고찰

그.위적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인준이나 인준청문회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의 국가는 밟고 있는데 비하여 영국과 같은 내각책임제의 국가에서는 밟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는다고 해서 영국의 경우 검증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럴리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는 주로 그들의 정부형태에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 내각책임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실체에 있어서 분립되어 있지 않아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적다고 하는 것,

둘째 잘못이 있는 경우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며 심한 경우는 임기와 관계 없이 언제나 불신임과 총선을 하므로서 카임을 물고 교체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셋째로 내각책임제에서는 행정부의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사람이 주로 다선 의원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의원직 생활과 특정상임위 소속 경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질, 인품, 능력, 전문성 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공적 조직의 생활경험을 전연 갖지 않은 인물이 갑자기 그.위적에 임용되는 미국이나 우리의 경우하고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이와 사정을 크게 달리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3권분립체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경우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는 국회에서 공청회도 많이 개최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고위 공직자의 임용전에 상원의 인준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청문회도 적지 않게 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그다면 우선 청문회는 공청회와 달리 진술인이나 참고인도 선서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출석불용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처벌가능 하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며 이러한 청문회의 역사적인 원천을 오래전 영국의 사법제에 찾고 있으나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²⁾

미국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인준청문회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단히 많은

2) 한성수, 「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40집, 1990년 1월, p. 2.

상원의 인준을 상원에 요청하고 있는데 이의 이유를 상술한 내각책임제와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미국의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3권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행정부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비교적 철저한 견제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의 근본원인은 행정권의 획포, 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의 근원은 구주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둘째 미국의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와 달리 임기 4년으로 되어 있어 실수가 있어도 물러나지 않으므로 고위직 공무원의 인선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임용(업판인사)권을 행정수반에게 전적으로 주지 않고 입법부도 나누어 가져야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근래에 이르러 행정의 전문화는 유능인의 인선이 요청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내각책임제와 달리 장기간에 걸친 의원직 생활을 통해서 정치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할 수 없으므로 자질에 대한 검증의 뜻도 있다고 하겠다.

넷째로 상원은 인준이나 인준청문회를 통해서 권고와 동의(advise and consent)를 하는 절차를 통해서 고위직 인사의 당파적 정실의 억제와 중립화 및 행정부의 정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 하겠다.

이냐하면 여기의 권고와 동의라고 하는 것의 뜻을 거절, 부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되어 실제에 있어서는 거절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 강한 권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할 대상은 헌법상 대사, 각료, 영사, 대법관 및 기타 법에 의하여 규정된 인물로 되어 있으나 이의 수가 그후 급증하여 1931~1936년에 22,487인 이었던 것이 1979~1980년에는 무려 154,797인으로 증가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들의 99%는 요식행위로 통과되고 있으며 1868년부터 시작된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도 정식으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는 근래에 이르러 지난 30년간 거의 없다는 것이다.⁴⁾

이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첫째로 인준대상인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지역이나 정치단체 및 압력단체의 유력인사나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 제출한다고 하는 것 둘째로 인준요청후 상원의 분위기상 인준받을 가능성이 희박하

3) 미국회 사무처의 자료

4) Floyd M. Riddick, *The United States Congress, Organization and Procedures. 71st-80th Congresses, Congressional Record 81st~97th Congresses.*

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철회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철회도 극히 적으나 대체로 매년 평균 10건 내외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

셋째로 상원에서 청문을 통하여 질문하는 경우 덮어놓고 까다롭게 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반대로 너그럽게 하면 형식화되고 만다는 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균형을 취하게 되는데 ◇ 러한 일반적인 고려외에 대상직종에 따라 상원의 엄격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다.

우선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되고 있어 가장 너그럽게 인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거절된 장관은 10인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차관의 경우는 장관의 경우보다도 임관을 통한 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전에 국회간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장관의 경우 보다 더 많이 인준이 거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행정부처의 경우와 달리 독립규제기관의 경우는 법제상 독립, 중립성을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는 이들기관을 국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보다 까다롭게 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상인에 대한 인준이나 청문회의 기본취지가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인사에의 간여나 분점에 적지 않게 뜻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근래에 이르러 정체·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청문회를 통한 인준의 절차를 약술하면 우선 대통령은 연방법죄수사국(FBI)의 신원조사를 통해 임용코자 하는 인물의 학력, 이력, 명력, 납세, 재산, 가정생활 등 개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⁶⁾ 이 조사와 함께 上院에 보내면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해당상임위원회에 이송되어 각 상위별로 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7일전에 예고되고 청문회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답변은 공개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크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질의 답변은 시간의 제약을 함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케 함과 동시에 특히 질문자의 질문내용이나 태도가 중요하게 되며 따라서 상대방의 인격존중, 사실의주의 질문, 자질과 유관한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므로써 의원의 품위가 지켜기야 할 것이다.

5) i. id.

6) 『아일보』, 1993년 3월 4일.

이러한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고위 공직자의 임용을 함으로서 보다 적격자를 임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대상 인원수가 과다하다고 하는 것, 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 취약점이 있다고 하겠다.

IV. 도입상의 고려점

우리의 경우 건국후부터 인준제도가 있었으나 대상인원수가 대단히 적었으며 청문회는 인준을 위한 것은 없었고 조사를 위한 것으로서 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5공비리 조사와 광주사건조사를 위한 것이 구성되어 청문이 이루어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나 공개 방송되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상대적으로 국회의 지위, 평가를 높였으며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서 의원들이 그들의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우 인준 또는 인사 청문회는 가져 본적이 없는데 이번 현정부 출범시 대통령 취임직후 발표된 인사 중 여러가지 이유로 좋지못한 평을 받게 되자 현정부가 시발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을 고려하여 임명되지 몇일 되지 않아 사임케 함으로써 실수로 인한 오점을 남기게 되자 개선책이 논의되었으며 그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하는 청문회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선 이를 상술한 미국에서의 필요성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의 정부형태는 미국하고도 다르며 영국하고도 다르고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확정이 되어있는 대통령중심제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당정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나 장관이 잘못하는 경우 또는 행정면에서 큰 실수가 있는 경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장관이나 총리가 사임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의원이 장관으로 임용되지만 그의 수는 적으며 또한 반드시 장기 의원직 생활을 하므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적지 않은 경우 공직조직생활의 경험이 없는 인사가 갑자기 임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소수의 경우 인준을 요하는 직위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의 다수를 여당이

거의 언제나 정당성이 높지 못한 방법으로 점하고 있으면서 마치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아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인준을 쉽게 받고 있어 그나마 제기능을 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형태의 특성은 외형상 미국식 정부형태나 영국식 정부형태와 다르면서도 양형태와 유사한 면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행정과 여당이 실제 협력을 통하여 국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실수가 있는 경우 영국과 같이 정권적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장치가 없으며 유권자나 국회에서 물을 수도 없게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고위직의 임용에 국회의 참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증을 덜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경우는 특히 행정권이 3권중 불균형적으로 막강하면서도 민주화의 기진으로 인하여 이의 사적, 당파적 남용이 현재까지 심했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가 대단히 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의 견제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을 통하는 것이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의 경우는 당내의 권위주의 성과 공천제로 인하여 당간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인준은 문제면에서 별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내의 야당의 적극 참여를 통하여 이들의 지나친 당파성 및 권력남용이 견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파인 야당이 청문회를 통하여 적극 견제하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셋째, 고위 행정직은 막강하고 권력을 돈 기타가치를 불로소득해 온 「공인된」 불행한 오랜 역사를 이어 왔다고 하겠다.

그리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권력자의 주변에 모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들의 주의를 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성격이나 능력을 기획하게 파악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없어 지난 날 수 없이 권력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후 친일파는 물론 부도덕한 사람, 비민주적 인사, 부패인사 등이 계속 고위직을 차지해 왔으며 오히려 바람직한 애국, 민주, 민족적이며 능력있는 인사는 권력자에 추종하지 않아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들은 적극적인 접근으로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이중행동을 하면서 밖으로 집권자에게 영합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사적인 가치장악에 열중하여 보다 영구적인 부를 축적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인사를 인사권자가 「인사는 비밀이다」라는 말의 잘못을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계속 실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 제 3자의 논평, 질의 검증을 받아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자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그들의 말이나 타인의 추천보다 같이 일해 본 사람의 체험이거나 그가 과거에 누구나 많이 장악하고 싶어하는 공금과 권력을 얼마나 깨끗하게 공정하게 관리하였는가 또는 누구나 피하거나 싫은 납세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 하는 것 등이 검증의 효과적인 근거단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 보다 적격자를 임용하는 길이 되며 또한 인사권자도 추천 임용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의 경우 종래의 소수적에 대한 인준제를 시정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면서 청문회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현재보다는 인준을 요하는 직위의 수가 약간 증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중요한 권력직, 종래 남용되었던 직위, 이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과 불만 더 나아가서는 한국정부나 한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없게 하였던 직위들이다.

둘째, 이들 중 특히 중요한 권력직, 예시하면 종래 정당성이 취약하고 민으로부터 자발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정권이 이러한 직위의 사적, 당파적인 장악으로 권력의 횡포와 돈의 동원을 통하여 정권유지에 이용해 왔던 직위들, 예시하면 검찰, 경찰, 법관, 안기부, 군간부, 국세직, 인사책임직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을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므로써 보다 막강한 권력의 중립화, 공평한 행사를 강요,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민주화, 적은 정부, 부정 부패가 감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러한 바람직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셋째, 다만 절차나 진행중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준을 요청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하여 인적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명단과 같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것, 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우선 길게 하지 말 것, 질의시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질의, 임용될 직위가 요청하는 자격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하여야지 혹시라도 사적감정이나 인격모독적인 내용의 질의는 공기방송을 통하여 극구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날 청문회시 저질의 질문을 한 경우와 바람직한 질문을 한 경우의 식별을 민이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이리 한 주의점을 염두에 두고 대선당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것을 김대통령 스스로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은 조직이나 돈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며 역동적 독립변수적인 사람이 한다는 공지의 이론에 비추어서도 진술한 소수의 권력적이 대해서는 청문회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았으면 한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와 같이 지나친 면은 지양하면서 우리의 적격인사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 익성, 「미의회 청문회제도 고찰」, 『국회보』, 1987년 1월.
- (2) 권용태, 「미의회의 소위와 청문회활동」, 『국회보』, 1988년 2월.
- (3) Arnold R. Douglas, *Congress and the Bureau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4) Common Cause, *The Senate Rubberstamp Machine: A Common Cause Study of the US. Senates Confirmation Process*, Washington D.C.: Common Cause, 1977.
- (5) Harris Joseph P.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 Study of Confirmation of Appointment by the United States Senat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68.
- (6) MacKenzie G. Calvin,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ppointments*, New York: Free Press, 1981.